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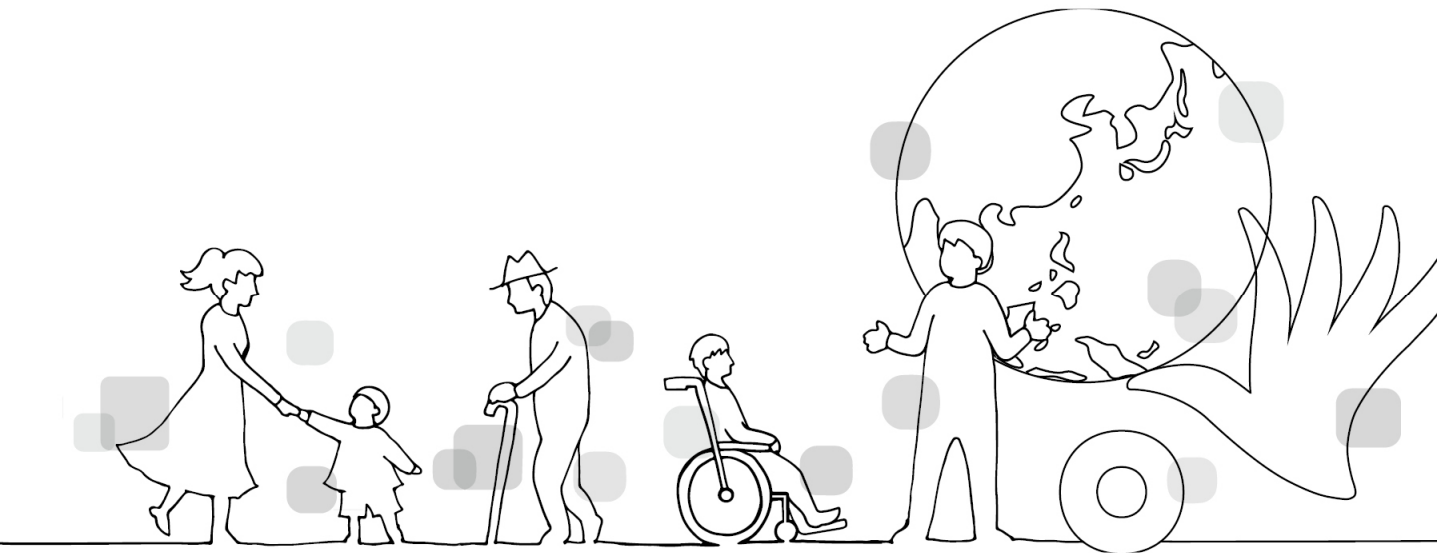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2026~203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2026~203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 목 차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2026~2030)

---



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	1
1. 수립 배경 .....	3
2. 추진 경과 .....	4
3.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구조와 의미 .....	5
II.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	7
1. 중기 전략의 수립 및 주요 내용 .....	9
2.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추진성과와 한계 .....	11
3.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추진 방향 .....	13
III.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	21
1. 비전과 사명 .....	23
2. 4대 전략목표와 24대 성과목표 .....	23
IV. 성과목표 세부 내용 .....	25
V. 체계도 .....	61



01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 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 1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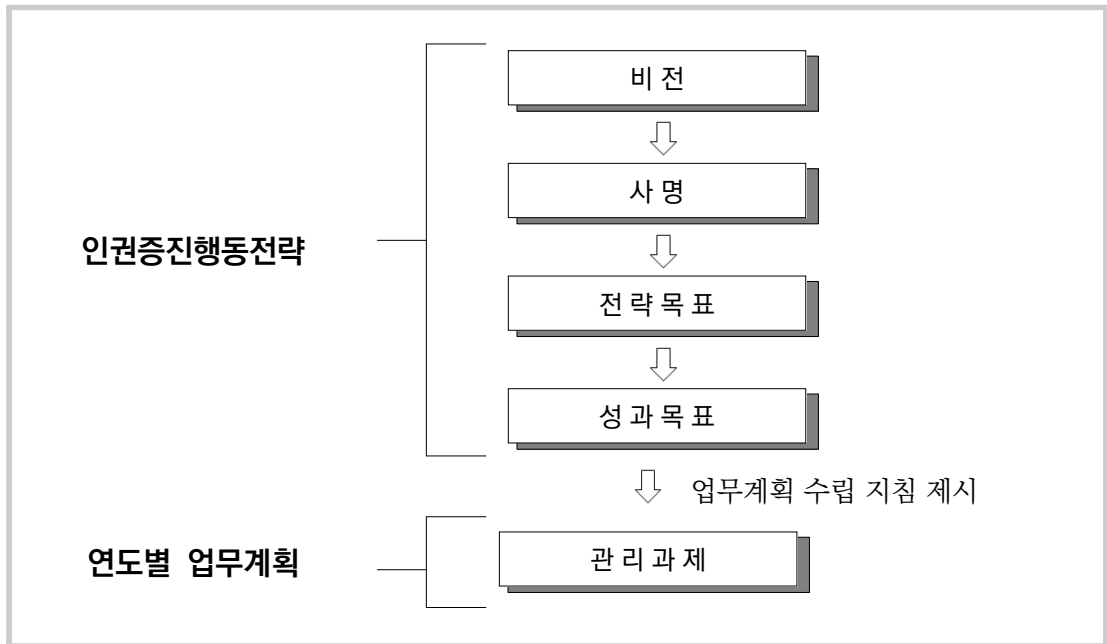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2006년 중장기적 업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년 단위 중기전략인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20, 5차례)을 수립하였고, 2021년 5년 단위 중기전략으로 변경한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함.
- ◎ 인권위는 매 시기마다 인권 현안과 내외부 환경, 인권위의 소명과 고민을 담아 마련한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인권증진행동전략』을 통해 인권위의 비전과 사명,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대내외에 명확히 제시하였고, 위 중기전략을 기반으로 매년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였음.
- ◎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존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보완하고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목표설정 체계로 수립됨.
- ◎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대내외 인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수립함.

## 2

## 추진 경과

- ◎ 4. 28.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전원위원회)
- ◎ 5. 8. 『인권증진행동전략』 실무추진팀 구성
- ◎ 5. 20. 실무추진팀 1차 회의(초안 논의)
- ◎ 5. 23. 확대간부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견 수렴
- ◎ 6. 4. 실무추진팀 2차 회의(초안 보완 논의)
- ◎ 6. 23. 『인권증진행동전략』 수립 중간 보고(전원위원회)
- ◎ 7. 3. 부서 및 대국민 의견수렴(시민사회단체 포함, ~ 7.16.)
- ◎ 7. 30. 실무추진팀 3차 회의(의견수렴 결과 반영 논의)
- ◎ 8. 5. 사무총장 주재 국장단회의 논의
- ◎ 8. 13.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안 확정 보고
- ◎ 8. 21. 상임위원회 상정
- ◎ 8. 26. 추가 의견수렴(8.26.~9.1.)
- ◎ 9. 11. 상임위원회 상정(재상정)
- ◎ 9. 25. 상임위원회 상정(3회 상정)
- ◎ 10. 16. 상임위원회 심의(4회 상정)
- ◎ 11. 3. 전원위원회 상정
- ◎ 11. 14. 인권위원 의견수렴(11.4.~11.14.)
- ◎ 11. 24. 전원위원회 상정(재상정)
- ◎ 12. 8. 전원위원회 상정(3회 상정)
- ◎ 12. 22. 전원위원회 의결(4회 상정)

## 1)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구조 및 연도별 업무계획과의 연계



## 2) 용어의 의미

- 비 전 : 인권위가 추구하는 이상
- 사 명 : 계획 기간 동안 인권위가 추구할 방향
- 전략목표 : 비전, 사명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할 가치
- 성과목표 : 추상적인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이자 하위 목표로서 인권위 연간 업무계획을 견인
- 관리과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과제로 연간 또는 다년간(계획 기간 내) 수행



02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 II.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 1

### 중기 전략의 수립 및 주요 내용

- 인권위는 중기 전략 수립기마다 그 당시 인권 현안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권위 역할을 정립하고자, 인권위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활동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중기 전략에는 수립 당시의 인권 현안과 내외부 환경, 인권위의 소명과 고민이 담겨있음.
- 인권위 설립 4년이 지난 2006년에 3개년 중기전략인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5차례 운영하였는데, 인권위 업무정착(제1기, 2006~2008), 국제적 맥락에서 인권위 역할 강화(제2기, 2009~2011),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응(제3기, 2012~2014), 계획과 실무 연계 강화(제4기, 2015~2017), 세부적·구체적 성과목표 설정(제5기, 2018~2020) 등 각 시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음.
-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위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보완하여 5년 단위 목표설정체계로 변경한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함.

※ 제1~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및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 비교

구분	계획 기간	계획 체제	특징 및 중점 요소
인권증진 행동계획	제1기 계획 (2006~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목표</li> <li>· 14대 세부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 업무 정착기에 수립. 업무 체계 구축과 역할 강화 목표가 다수</li> </ul>
	제2기 계획 (2009~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전략목표</li> <li>· 20대 성과목표</li> <li>· 특별사업 1개</li> <li>· 기획사업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에서 인권위 역할 강화를 강조</li> <li>· 비전-사명-전략목표-성과목표 체계 확립</li> </ul>
	제3기 계획 (2012~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전략목표</li> <li>· 23대 성과목표</li> <li>· 특별사업 1개</li> <li>· 기획사업 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축소 이후 수립된 중기 계획. 부족한 인적·물적 여건 속 '세대 갈등', '다문화' 등 새로운 인권 환경 속 역할 고민</li> </ul>
	제4기 계획 (2015~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전략목표</li> <li>· 20대 성과목표</li> <li>· 특별사업 1개</li> <li>· 기획사업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교육 관련 목표 확대</li> <li>· 계획과 실무의 연계 강화 노력 뚜렷</li> </ul>
	제5기 계획 (2018~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전략목표</li> <li>· 19대 성과목표</li> <li>· 특별사업 1개</li> <li>· 기획사업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권 강화와 차별해소를 2대 핵심 목표로</li> <li>· 구체성 있는 성과목표 중심의 계획 수립</li> </ul>
인권증진 행동전략	제1기 전략 (2021~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전략목표</li> <li>· 21대 성과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단위 목표설정체계로 변경</li> <li>· 재난, 기후변화, 신기술, 스포츠 등 새로운 인권현안 대응 강화</li> </ul>
	제2기 전략 (2026~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전략목표</li> <li>· 24대 성과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개념 확대 및 인권의 제도화 추세 반영</li> <li>·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 도모</li> </ul>

- ◎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인권규범의 제도화를 강화하면서 인권위의 새로운 도약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 등을 3대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3대 전략목표와 21대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음.
- ◎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상황 및 기후위기 확산에 대응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 기준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접근 방향을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인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
- ◎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의 빈곤, 차별, 소외 등 다양한 인권의제를 다루고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주도하였으며, 조사구제, 정책기능 및 인식개선 등 인권위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주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음.
- ◎ 인권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2022)를 통해 군부대 방문조사, 사망사건 조사 입회 등 군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였고, 국유재산기금 예산 확보(2021)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교육원의 법적 근거 마련(2025) 및 개원(2026년 예정)을 계기로 인권교육의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 아울러,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2024)하여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국제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 그러나, 빈곤과 소득 양극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으나 정책권고 등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다소 미흡하였고, 평등법 제정 논의 확산과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인권옹호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국가인권지수·인권영향평가체계 개발·구축 등 체계적인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가. 인권의 개념 확대 및 인권보장체계 제도화

*비상계엄 선포(2024.12.3.)에서 국회 탄핵소추 가결(2024.12.1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2025.4.4.), 조기 대선(2025.6.3.)의 과정은 국민의 헌법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인권 관련 요구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개헌과 사회개혁 과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 ◎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고,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긴급권의 한계, 집회·시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인권과 다양성 존중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필요성 등의 인권 의제가 대두됨.
- ◎ 보편적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및 인권조례 등 국내 인권보장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새로운 시대 준비, 새로운 기본권 추가와 사회권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의 현실화 등 기본권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새정부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나. 국제적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신기술, 기업과 인권, 노인인권 등 인권의제가 전세계적 과제로 부각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점차 구체적인 쟁점이 도출되고 법제화·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일상이 되고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2024)과 함께,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법과 제도가 국내외에서 늘어나고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도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취약 계층’ 결의(A/HRC/RES/47/24)를 채택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입법 조치를 채택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음. 이러한 기후 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AI는 인사관리, 교육, 의료, 금융, 행정서비스 등 공공·민간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자리 대체와 안전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차별적 대우, 디지털 성폭력, 보이스피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등 인권 증진, 국가 행정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보 인권 의제 발굴 등 AI가 주는 편익과 동시에 부작용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제도화(인권실사, 인권환경공시 등)가 진전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전세계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기준과 제도화가 진행되는 해외 법규에 대비해야 하므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인권 경영 확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 유엔인권이사회가 노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개방형 정부간 워킹 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2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산에 대응 필요
- ◎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필요
- ◎ 산적한 인권현안에 대응하던 시기에서 선제적 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전환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의 인권 이슈 확대를 선도하면서, 주요 인권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시점

## 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인권취약분야 인권개선 강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사회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인권개선을 비롯하여 돌봄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 경제규모가 GDP 기준 세계 14위(World Bank, 2023)로 성장하였으나, 소득 상·하위간 격차가 확대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8.2%를 차지(통계청, 2024.8.)하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벌·학력주의는 계층간 교육 격차, 사회적 기회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 기회의 동등한 부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필요
-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2025)를 넘고, 체류 외국인인 265만(2024)을 넘는 등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및 다인종·다문화국가로 진입하였으며,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0.7로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세계경제포럼, 2024)하고, 청년 세대는 자살, 정신건강 악화, 고립, 주거불안, 고용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는 등 노인, 이주민·난민,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인권취약 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 확충이 요구됨.
- ◎ 많은 국가에서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지역사회 등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경향에 따라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군인권보호 체계의 확립을 바탕으로 군인 등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사제도 도입에 따른 수사의 지연, 불공정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보호 소홀 문제를 모니터링하며,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 아울러, 스포츠 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강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제도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입법·사법·행정과 접목,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 역할 제고 필요

- 최근 국제적으로 분쟁이 격화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보호무역 강화 등 지역, 국가 간 갈등구조의 심화, 반이민 정서 등 인권의 후퇴 움직임 속에서 유엔·지역연합 등 기존 인권보호 체계의 역할 약화 우려
- 유엔 인권제도 이행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NMIRF)의 설립과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총회(A/68/268) 및 인권이사회(A/HRC/30/25 등)에서 채택된 많은 결의안에서 권고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24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며 여성 권리증진, 아동권리 및 장애인권리 보호, 이주민과 난민 보호,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국제인권 규약 이행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공약 제출
- 그럼에도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권고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반복해서 제기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유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검토 필요
-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마. 인권위의 역할 제고

인권위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는 인권위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권위 역량 강화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2022)되고, 국가인권교육원이 신설(2025)되는 등 인권위 기능이 강화되면서 제5차 인권NAP(2028~2032) 권고 및 인권위 설립 30년(2031)을 내다본 인권위 역할 제고를 위한 면밀한 대응 요구
- ◎ 인권옹호활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조사구제 업무가 다변화(고용노동부, 각 군, 노동위원회, 지자체 인권기구, 권익옹호기관, 대학 인권센터 등)되는 가운데, 인권관련 기구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냄과 함께, 이들 기구와 협력 및 보완 관계 구축 필요
- ◎ 인권사무소 개소 20년(2025)을 매개로 인권조례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인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긴밀한 역할 수행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2016~2026) 및 GANHRI를 대표한 UN 고령화 실무그룹 참여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A등급 유지, 2025.10.) 등 인권위의 독립성,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개선되고 있어 인권위 역할 정립과 협력의 필요성 증대
- ◎ 인권위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권고, 조사구제, 교육·홍보, 교류·협력 등 인권위 4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우리 사회 인권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

- ◎ 한편, 행정업무와 같은 일상·반복적 업무는 중기 전략체계가 아닌 별도의 추진체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03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 Ⅲ.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 1 비전과 사명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사람의 존엄,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 2 4대 전략목표와 24대 성과목표

##### ①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 (1)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 (2) 사회권 보장 강화
- (3)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 ②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 (1)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2) 기후위기와 인권
- (3)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 (4)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공공성 강화
- (5)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 (6)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 (7)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 ③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 (1)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기반 조성
- (2)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 (3)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 (4)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 (5)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 (6)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 (7)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 ④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 (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 (2)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 (3)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 (4)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 (5)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 (6)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 (7)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성과목표 세부 내용





## 전략목표 ①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

### 1. 전략목표 핵심 추진 방향

-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등 일련의 사건 이후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3가지 주요 인권 범주를 성과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 전통적인 자유권을 충분히 향유하고, 사회권에 대한 논의 확산을 통해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론화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2. 성과목표

- ①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 ② 사회권 보장 강화
- ③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추진 배경

- ◎ 12·3 비상계엄 등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 얼굴인식, 포렌식 기술 등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분야에 도입·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침해, AI 기반 범죄예측 알고리즘의 편향성·오판 가능성 등 인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250%), 안양소년원(185%) 등 소년원의 수용률이 심각한 상황으로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의료처우 등 유엔조약기구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 보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분야의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권 침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화하고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성과목표 설정 필요

---

---

## 추진 방향

---

---

- ◎ 비상계엄 등 관련 권력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 ◎ 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사법분야 인권문제 연구 및 정책 대응
- ◎ 집회 및 시위 현장 모니터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 대응
- ◎ 구금시설 과밀수용 및 수용자 의료처우 등 인권상황 개선

### 추진 배경

- ◎ 우리 사회는 최근 환경권, 문화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새로운 권리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회권 영역에서 인권위 조사·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개별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영역에서 인권위의 역할 강화 요구에 본격적 대응을 준비할 시기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함께, 주거, 건강,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사회권 보장의 기반을 갖추고 사회권의 검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성과목표로 제시

### 추진 방향

- ◎ 빈곤 및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 ◎ 의료격차 해소를 통한 보편적 건강권 보장
- ◎ 미래세대 사회권 강화를 통한 세대 간 연대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 ◎ 사회권 관련 개인구제절차 강화와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 연구

### 추진 배경

-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추진되는 상황으로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요구됨
- ◎ 혐오표현의 양태와 범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임
- ◎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하고, 혐오표현 대응 기준과 체계를 구체화하여, 국내 차별 예방 기제를 강화하도록 성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촉진
- ◎ 혐오표현 판단 및 대응 기준 마련
- ◎ 차별 및 혐오 대응 교육 및 대중 인식 개선
- ◎ 혐오표현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촉진

## 전략목표 2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 1. 전략목표 핵심 추진 방향

-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기후변화, 기업경영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및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성과목표 제시
- 노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제정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돌봄권이 새로운 사회권으로 부각되고, 북한 인권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한편, 수사제도 개편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함.

### 2. 성과목표

- ①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② 기후위기와 인권
- ③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 ④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공공성 강화
- 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 ⑥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 ⑦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 추진 배경

- ◎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편향된 알고리즘 문제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전자정보 수집과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침해 이슈,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의 위험도 커지고 있음.
- ◎ 이에, 개인정보보호, 국가 행정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보인권 의제 발굴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방안 검토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디지털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 강화 방안 마련
-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차별 해소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 산업화시대 이전(1850~1900) 대비 연간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폭이 2024년에 처음으로 1.5℃를 초과하며 가장 더운 해로 기록
- ◎ 우리나라는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며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함.
- ◎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효적 감축을 담보할 수 없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4.8.29.)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성과목표에 반영

### 추진 방향

- ◎ 기후위기에 따른 적응 및 감축 분야 정책 개선
- ◎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정책·제도 검토 및 개선 권고
- ◎ 기후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강화

### 추진 배경

- ◎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인권경영 제도화가 진전되고, 우리 기업도 국제인권기준과 각국의 법제 변화에 대응해야 하므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인권경영 강화 필요
- ◎ 인권경영이 공공기관 등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민간 기업도 인권경영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 사회공헌(CSR)의 일환, 기업 내부의 인권문화 확산 정도로 인식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많아,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는 인권경영 내재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기업 내 의사결정 및 사업 활동에 있어 인권존중책임을 내재화하고,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책·제도 점검 및 개선 권고
- ◎ 인권경영 관련 국제 법제 점검 및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
- ◎ 공공·민간기업의 인권경영 고도화 지원(가이드라인 제공 등)
- ◎ 인권경영 관련 공공·민간기업·국제기구, 해외 NGO 등과의 협력

### 추진 배경

- ◎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의 궁극적 목표가 노인권리협약 성안임을 강조하는 결의(78/13) 채택(2025)하였는데,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을 수임(2016~2026)하면서, 유엔 노인권리협약 초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 의제 선도
- ◎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여 2025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50년에는 같은 비율이 40%까지 급격히 증가 전망
- ◎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높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과 함께, 노인학대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직면
-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억제, 격리, 자기결정권 제한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인권보장 기준의 미흡한 상황이며, 인권영향평가 체계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의료, 요양 및 돌봄 등 일상에서의 존엄한 삶과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호,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보장 체계 구축과 제도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

---

---

## 추진 방향

---

---

- ◎ 건강권, 생명권 등 노인인권 현안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논의 참여
- ◎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 ◎ 노인인권 결정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후속조치 이행점검
- ◎ 인권위 내 노인인권 전담부서 설치

### 추진 배경

-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2014)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 발표 예정(2025.9.)
- ◎ 북한이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025.4.)와 북한인권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총회 고위급 전체회의(2025.5.)에 적극 참여하는 등 예전과 달리 국제사회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처 필요
-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국내 발효(2023.2.3.)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코로나19 이후 더욱 폐쇄적인 환경에 처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 및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대북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신뢰성 높은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동향 분석·공유
- ◎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실효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 북한인권 개선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 ◎ 탈북민 강제복송 금지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 관련 법제화

### 추진 배경

-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권 보장이 중요한 인권 의제로 부상하였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빈번한 땅꺼짐 사고 등 재난·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대응이나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해 점차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 내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안전사회 실현까지는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들이 남아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는 인식의 확산 및 2차적 인권침해 예방, 재난 발생원인 및 책임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회복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참여 및 권리보장,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혐오 표현 등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인권위의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성과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재난·안전 관련 법제 연구 및 안전권,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 마련
- 심각한 재난·참사 발생 시 인권위 자체 긴급대응체계 구축(대응체계 운영기준 설정, 대응 내용 및 역할 분담) 등

### 추진 배경

- 검·경수사권 조정(2021, 2022)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정(2026.10.2. 시행)
- 그 결과 수사권은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금융감독원 등), 중대범죄수사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기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기소권자인 검사의 지휘감독이나 수사협력이 제한됨으로써 향후 부실수사 및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의 수사지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수사제도 개편에 대한 점검 필요
-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감시

### 추진 방향

-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 필요 사항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개편된 수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수사지연, 부실수사 및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각 수사기관 인권교육 강화

## 전략목표 ③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 1. 전략목표 핵심 추진 방향

-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유엔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관련 법령·정책 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 주체별로 성과목표를 제시함.
-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의 노동3권, 안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인권 실현 및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을 성과목표에 포함함.

### 2. 성과목표

- 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조성
- ②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 ③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 ④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 ⑤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 ⑥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 ⑦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 추진 배경

- ◎ 성희롱이 법제화되어 규제 대상이 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성희롱 피해 및 구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
- ◎ 우리 사회에서 가족 및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과 구제를 성과 목표로 제시
- ◎ 성소수자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성차별·성희롱 문제를 포함하는 실질적 평등 목표를 포괄

### 추진 방향

- ◎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및 건강권 보장
- ◎ 성별임금격차 해소
-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젠더기반 폭력 대응체계 마련
- ◎ 정치 등 공공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 ◎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 ◎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 추진 배경

- ◎ 2022년 장애인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 14.9%의 2.4배에 이르며,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8.8%로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7% 대비 열악한 상황임.
-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장애인의 개별성, 다양성을 융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를 고려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
- ◎ 탈시설 및 중증 장애인의 적절한 주거권 보장 정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중증장애인은 98.3%이고, 그 중 발달장애인이 80%임. 현 시점에서 위 정책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단순한 시설 퇴소를 넘어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평등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원칙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공간 또는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회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제도·관행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각 영역에서의 접근권, 참정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등에 참여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로 제시

---

---

## 추진 방향

---

---

- ◎ 장애인 빈곤 감소를 위한 고용 제도개선 검토
-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장애인 정보접근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성, 참정권 등 점검 및 개선과제 검토
- ◎ 장애인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검토
- ◎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경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 ◎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방안 등 제도개선 검토

### 추진 배경

-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돼 왔지만 가정환경 상실 등으로 인한 취약아동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
- ◎ 최근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도입된 가운데, 인권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 상황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아동·청소년 관련 그동안의 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취약아동 지원 확대 및 권리기반 보호 방향 검토
- ◎ 아동 대상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 교사,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기반 마련
- ◎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인권과제 발굴

### 추진 배경

- ◎ 2024년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65만 명을 넘었고, 정부는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이주민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 이주민은 제조·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적 인식은 낮고 오히려 차별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 ◎ 아울러, 난민인정 심사 기간이 장기화(2022년 기준 20.8개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9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조약임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난민법」,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이주글로벌컴팩트(GCM) 및 난민글로벌컴팩트(GCR) 참여 요구 등 새로운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 이주민·난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 이주민·난민 관련 법·제도·정책 등 인권기반 개선 도모
-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 ◎ 시민사회, 학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 국내 협력 강화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검토
- ◎ 인권위 내 이주 인권 전담부서 설치

### 추진 배경

- ◎ 개방성·투명성 확대 등 군대 인권환경의 개선 및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군인권보호관 도입 등을 통해 군인권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군대 내 잔존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검토·개선해야 할 시점임.
- 군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2023년 사망사고 79건의 86%가 자살사고)하고 있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병영 내에서 군인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추진 방향

- ◎ 군인 등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 구제의 신속성 강화
- ◎ 군부대 방문조사를 통한 인권사각지대 검토 및 예방활동 강화
- ◎ 군대 내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등 군인 등의 인권보호 과제 발굴 및 개선
- ◎ 성평등한 병영문화 정착
- ◎ 군인 등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 배경

- ◎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고,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 최근 간접고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 신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제기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노동권은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인간존엄성의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공정한 노동조건과 집단적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로 제시

### 추진 방향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 방안 검토
- ◎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검토
-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 검토
- ◎ 노동3권 관련 법제화 동향·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추진 배경

- ◎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채택·이행,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 등 인권위 권고(2022)와 함께, 스포츠계의 법령, 제도의 발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스포츠 인권 환경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스포츠 인권의 바탕이 되는 법·제도와 조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포츠계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인권존중에 기반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여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

### 추진 방향

- ◎ 스포츠 분야별·대상별 인권보호 관련 제도개선 검토
- ◎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 ◎ 스포츠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 및 동향 모니터링·분석
- ◎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전략목표 4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 1. 전략목표 핵심 추진 방향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지역공동체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위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아울러, 인권위의 4대 기능인 조사구제, 정책개선, 인권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성과 목표로 제시

### 2. 성과목표

-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 ②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 ③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 ④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실효성·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 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 ⑥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 ⑦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추진 배경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및 ILO 핵심협약에 대한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자유권·사회권 보장 강화, 기업과 인권, 환경과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에 관심 제고를 요구하는 상황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유엔 조약기구와 국내인권시민단체 등의 가입 촉구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중 일부에 대해 유보·가입·비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유엔 조약기구심의 및 UPR 등 권고의 실효적 이행이 지체되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이행 및 후속 조치의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체계화(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NMIRF)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인권의제 부상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적극적 참여, 국제노인인권규범 성안을 위한 지속적 견인 활동 등 국제적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인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목표 제시 필요

---

---

## 추진 방향

---

---

-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촉구, 유엔 조약기구의 미이행 권고사항 관리,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마련 등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제고
- ◎ 국제인권제도 심의 및 국제인권정책 대응 강화
- ◎ GANHRI, APF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 ◎ 국제인권 콘퍼런스 운영 등 현안 대응

### 추진 배경

- ◎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및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됨.
- ◎ 유엔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2013)와 인권위의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2012) 및 지자체 인권제도 활성화 의견표명(2017) 이후 인권조례 제정, 지자체 인권업무 전담자 지정, 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일정 부분 조성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인권기본 조례 폐지 움직임, 인권위원회 폐지 등 전반적인 지역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지자체 행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등 지자체 인권업무가 체계화되고 연속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견인함으로써 지역인권 보장체계 강화 및 지방인권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성과목표를 제시할 필요

### 추진 방향

- ◎ 실태조사, 모니터링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 ◎ 지방인권기구 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활성화
- ◎ 인권사무소 설치 근거 법률 마련

### 추진 배경

- 인권위 독립성의 강화는 인권위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독립기구로서 업무 효율성·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노력이 요구됨.
- 국가인권기구로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2031년 설립 30년을 맞이할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파리원칙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독립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목표 및 지향점을 명확히 하여 성과목표 제시
- 다만, 일상·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업무는 성과목표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 과제로 추진

### 추진 방향

- 독립성,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인사 독립성, 인권위원 추천 및 선정의 다양성·독립성 강화, 사회권 조사대상 확대 등 인권위법 개정 추진
- 헌법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 AI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한 인권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규모 단위별 밀도 높은 교육 시행
- 직원역량 강화교육의 증장기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검토

### 추진 배경

- ◎ 조사구제 활동은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사후구제를 통한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조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가 증가하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 ◎ 당사자 간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설계된 조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사건처리의 장기화, 낮은 권리구제율, 사건의 난이도 상승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성과목표 제시 필요
- ◎ 조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주고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정 활성화를 성과목표에 포함

### 추진 방향

- ◎ 조사관 대상 교육의 체계화·활성화를 통한 조사전문성 강화
- ◎ e-진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장기미결 진정사건 집중 관리를 통한 조사의 신속성 강화
- ◎ 피해자 관점에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 조정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조정제도 정착 도모

### 추진 배경

- ◎ 인권위는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을 기반으로 정부에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제4차 인권NAP(2023~2027)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5차 인권NAP(2028~2032) 권고를 준비할 필요
- ◎ 인권NAP가 국내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인권NAP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적 개선 노력 병행 필요
- ◎ 체계적인 국가인권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인권상황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계 정보가 필수적임. 2019년 이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권의식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인권지수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 ◎ 인권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권고 등 이행상황 확인·점검 노력을 지속 강화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적 업무추진을 위한 체계 정립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인권NAP 등 인권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의식실태조사와 국가인권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인권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에 반영할 필요

---

---

## 추진 방향

---

---

- ◎ 제4차 인권NAP 이행상황 점검 및 제5차 인권NAP(2028~2032) 권고안 마련
-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협력 강화
- ◎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신뢰성 제고
- ◎ 권고등 이행상황 확인·점검 체계(인권위법 제25조 제5항) 정립

### 추진 배경

- ◎ 인권위는 교육협력심의관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인권교육 업무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26년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인권교육 체계 정립이 요구됨.
- ◎ 아울러,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위가 추진하는 인권교육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권정책 홍보 추진 및 향후 대변인 신설 등을 통한 언론 홍보 강화 필요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이후 내용·대상·영역별 인권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및 언론홍보를 통한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현안에 대국민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추진

### 추진 방향

- ◎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화, 인권교육 허브 역할 이행
- ◎ 인권교육의 확장과 인권 가치의 확산
- ◎ 인권옹호자 양성 및 지원
- ◎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 추진 배경

- ◎ 신뢰를 기반으로 각 영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 인권위가 인권영역에서의 권리구제를 전담하던 상황에서, 근래 장애인권리 옹호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등장으로 권리구제의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들과의 보완적 관계 형성을 통해 권리구제의 폭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 우리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의 주체, 내용, 영역이 계속 확장하면서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인권옹호기관 등과의 소통 및 일상적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과목표에 반영할 필요

### 추진 방향

- ◎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
-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 ◎ 다양한 인권옹호기관과의 역량 강화 지원



05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

# 체계도





## V. 체계도



### 제2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체계도

-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 모든 사람의 존엄,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전략목표	①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②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③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④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및 인권 거버넌스 강화
성과목표	(1)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2) 사회권 보장 강화 (3) 차별과 혐오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2) 기후위기와 인권 (3)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4) 초고령사회 노인 권리보장 및 돌봄공공성 강화 (5)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 (6)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및 피해자 권리 강화 (7) 수사제도 개편과 인권보호	(1)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기반 조성 (2)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3)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4)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5) 군인 등의 인권보호·증진 강화 (6)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인권 실현 (7) 인권존중 스포츠 환경 조성	(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및 국제적 협력 강화 (2)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인권의 지역화 (3) 인권위 책임성·독립성 강화 및 역량 제고 (4)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및 조정 활성화 (5)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권고 이행 체계 강화 (6)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가치 확산 (7) 다양한 인권옹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제1기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체계도

-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전략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b>성과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li> <li>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li> <li>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li> <li>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li> <li>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li> <li>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li> <li>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li> <li>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li> <li>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li> <li>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li> <li>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li> <li>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li> <li>⑦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li> <li>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li> <li>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li> <li>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li> <li>⑤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li> <li>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li> <li>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li> </ul>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체계도

-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성과목표	<p>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p> <p>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p> <p>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p> <p>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p> <p>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p> <p>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p> <p>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p> <p>2.3. 아동의 놀 권리 보장</p> <p>2.4. 장애인 교육권 보장</p>	<p>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p> <p>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p> <p>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p> <p>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p> <p>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p> <p>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p> <p>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p> <p>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p> <p>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p>	<p>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p> <p>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p> <p>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p> <p>11.3. 노동인권교육 강화</p> <p>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p> <p>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p> <p>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p> <p>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p> <p>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p> <p>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p> <p>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p>	<p>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p> <p>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p> <p>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p> <p>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p> <p>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p> <p>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p> <p>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p> <p>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p> <p>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p> <p>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p>

	<p>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p> <p>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p> <p>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p> <p>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p> <p>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p> <p>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p> <p>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p> <p>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p> <p>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p> <p>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p> <p>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p>	<p>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p> <p>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p> <p>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p> <p>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p> <p>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p> <p>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p> <p>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p> <p>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p> <p>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p> <p>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p> <p>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p>	<p>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p> <p>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p> <p>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p> <p>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p> <p>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p> <p>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p>	<p>⑮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p> <p>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p> <p>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p> <p>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p> <p>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p> <p>⑯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p> <p>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p> <p>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p> <p>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p> <p>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p>
<p><b>특별사업</b></p>	<p><b>현요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b>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 · 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p>			
<p><b>기획사업</b></p>	<p><b>위원회 역량강화</b>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p>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 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li> <li>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li> <li>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li> <li>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li> <li>5. 인권평가제도 도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li> <li>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li> <li>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li> <li>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li> <li>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li> <li>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li> <li>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li> <li>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li> <li>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li> <li>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li> <li>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li> <li>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li> <li>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li> </ol>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

-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b>성과 목표</b>	1. 사회권의 확대·증진 2. 자유권의 보장·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b>특별 사업</b>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b>기획 사업</b>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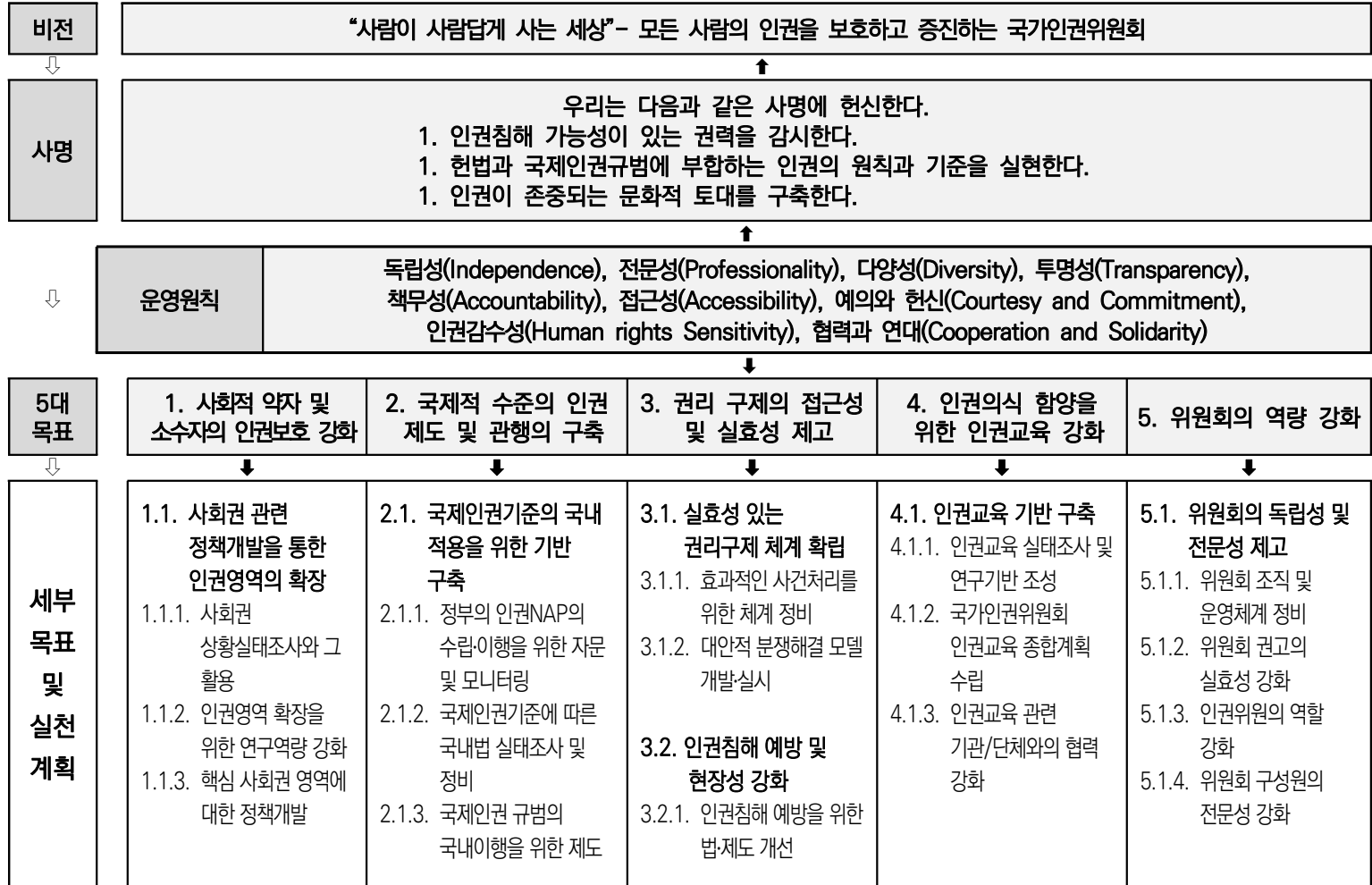
- ◎ 비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사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 목표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급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사형제 폐지 입법화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3. (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3. (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보호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b>특별사업</b>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b>기획사업</b>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②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③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p><b>1.2. 차별시정기능 강화</b></p> <p>1.2.1. 차별금지법 제정</p> <p>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p> <p>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p> <p><b>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b></p> <p>1.3.1. 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p> <p>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p> <p>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p>	<p>및 관행의 연구</p> <p>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p> <p><b>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b></p> <p>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p> <p>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p> <p>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p>	<p>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p> <p>3.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p> <p>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p> <p>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p> <p><b>3.3.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b></p> <p>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p> <p>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p>	<p><b>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b></p> <p>4.2.1. 학교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의무화</p> <p>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p> <p>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p> <p><b>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b></p> <p>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p> <p>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p> <p>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p>	<p><b>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b></p> <p>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p> <p>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p> <p>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리강화</p> <p><b>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b></p> <p>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p> <p>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p> <p>5.3.3.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p>
--	--	---	---	--	---